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22.1.13. 시행)에서 군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개관 명시(안 제1조 ~ 제3조)
- 의견제출 방법, 검토 등 명시(안 제4조 ~ 제8조)
- 차별대우 금지, 비밀 준수 의무 등 명시(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주민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가 조례로 위임되었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
안 제7조에서는 30일 이내 검토 결과 통보
안 제9조에서는 차별대우 금지내용이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군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
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
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
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
략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군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